

#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553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2월 28일  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변경된 기금명을 기금운용심의회에 명칭에도 반영하고, 기금관리 주체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는 것에서 현행대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되는 것으로 수정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기금의 조성 및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둔 기금 운용심의회에 명칭을 “서울특별시 성평등 가족 기금운용심의회”로 규정함(안 제41조제1항).
- 기금운용심의회에 위원장을 현행대로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규정함(안 제41조제3항).

#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”를 “성평등 가족 기금운용심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장과”를 “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되고,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0조(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)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,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·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이나 제3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5장 <u>성평등 기금</u></p>	<p>제30조(시민사회·기업과의 협력과 지원) -- ----- ----- <u>성평등을</u> <u>실현하고 가족을 지</u> <u>원하기</u> ----- ----- ----- <u>비영리</u> <u>법인·비영리단체 또</u> <u>는 기업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성평등</u> <u>가족 기금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장 <u>성평등 가족</u> <u>기금</u></p>	<p>제30조(시민사회·기업과의 협력과 지원) -- ----- ----- <u>성평등을</u> <u>실현하고 가족을 지</u> <u>원하기</u> ----- ----- ----- <u>비영리</u> <u>법인·비영리단체 또</u> <u>는 기업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성평등</u> <u>가족 기금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장 <u>성평등 가족</u> <u>기금</u></p>
<p>제39조(기금의 설치) ① 시장은 성평등을 <u>촉</u></p>	<p>제39조(기금의 설치) ① ----- <u>실</u></p>	<p>제39조(기금의 설치) ① ----- <u>실</u>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<u>진하기</u>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제40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</p> <p>1. <u>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,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</u></p>	<p><u>현하기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</u></p> <p>4. <u>개인 또는 법인 등이 성평등 실현 목적에 사용하도록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</u></p> <p>5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제40조(기금의 용도) ① ----- -----.</p> <p>1. <u>성평등 실현 및 가족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</u></p>	<p><u>현하기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</u></p> <p>4. <u>개인 또는 법인 등이 성평등 실현 목적에 사용하도록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</u></p> <p>5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제40조(기금의 용도) ① ----- -----.</p> <p>1. <u>성평등 실현 및 가족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</u>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<u>여 확대 등 성평등 촉진 사업</u></p> <p>2. 제30조에 따른 <u>법 인 또는 단체가</u> 수 행하는 사업</p> <p>3. <u>여성관련시설의 설 치 및 운영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41조(기금의 관리· 운용)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·운용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<u>서울특별시 성평등 기금운용심의회</u>(이하 "기금운용심의회" 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위원장은 여성가 족정책실장이 되고,</u> 부위원장은 위원 중</p>	<p>2. ----- <u>법인,</u> <u>단체 또는 기업이</u> - -----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3. (현행 제4호와 같 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1조(기금의 관리· 운용) ① (현행과 같 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위원장과</u> ----- ----- -----</p>	<p>2. ----- <u>법인,</u> <u>단체 또는 기업이</u> - -----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3. (현행 제4호와 같 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1조(기금의 관리· 운용)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·운용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<u>서울특별시 성평등 가족 기금운용심 의 회</u>(이하 "기금운용심 의회"라 한다)를 둔 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에서 호선하며, 위촉 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중에서 시장 이 위촉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④ ~ ⑧ (생략)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 음)</p> <p>④ ~ ⑧ (현행과 같 음)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 음)</p> <p>④ ~ ⑧ (현행과 같 음)</p>

##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 제목“(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)”을“(시민사회·기업과의 협력과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,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”를 “성평등을 실현하고 가족을 지원하기”로, “여성단체·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”를 “비영리법인·비영리단체 또는 기업의”로, “성평등기금”을 “성평등 가족 기금”으로 한다.

제5장의 제목 “성평등 기금”을 “성평등 가족 기금”으로 한다.

제39조제1항 중 “촉진하기”를 “실현하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

4.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성평등 실현 목적에 사용하도록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

제4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법인 또는

단체가”를 “법인, 단체 또는 기업이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.

1. 성평등 실현 및 가족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

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”를 “성평등가족기금운용심의회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0조(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) 시장은 <u>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,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</u> 위해 시에 소재하고 있는 <u>여성단체·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</u>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이나 제3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<u>성평등기금</u>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5장 <u>성평등 기금</u></p> <p>제39조(기금의 설치) ① 시장은 <u>성평등을 촉진하기</u>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30조(시민사회·기업과의 협력과 지원) ----- ----- <u>성평등을 실현하고 가족을 지원하기</u> ----- ----- -- <u>비영리법인·비영리단체 또는 기업의</u> ----- ----- --- <u>성평등 가족 기금</u>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5장 <u>성평등 가족 기금</u></p> <p>제39조(기금의 설치) ① ----- ----- <u>실현하기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</u></p> <p>4. <u>개인 또는 법인 등이 성평등</u></p>

3. (생략)

제40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

1.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,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촉진 사업
2. 제30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
3.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

4. (생략)

② (생략)

제41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(이하 "기금운용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~ 5. (생략)
- ② ~ ⑧ (생략)

실현 목적에 사용하도록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

5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제40조(기금의 용도) ① -----  
-----.

1. 성평등 실현 및 가족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
2. ----- 법인, 단체 또는 기업이 -----  
<삭 제>

3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1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가족 기금운용심의회(이하 "기금운용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⑧ (현행과 같음)